

의안번호	2205472
의 퇴 인	이준석 의원
회 답 일	2024.11.13.
추 계 번호	24C47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전국에 52개 교육지원청을 신설하는 경우 ‘교육장’에게 소요되는 인건비·기본경비·자산취득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97억원(연평균 59억원)으로 추계
- ‘교육장’ 인건비 등을 제외한 조직·인원 증감에 따른 비용과 청사 신축 또는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경비가 추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

[표 1]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교육장, 안 제34조)	33	64	65	67	68	297	59

주: 1) 2025년의 경우 6개월분만 계상됨

2) 전국에 52개 교육지원청이 신설되는 경우 ‘교육장’에게 소요되는 경비이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4년도 장학관 봉급 등을 준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제1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1개의</u>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의무규정
		(제2항)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u>시·도의 조례</u> 로 정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	국·과에 증원될 직원 정원 및 청사 건축 또는 리모델링 여부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교육지원청 신설시 필수 지출경비로 보이는 ‘교육장’에 대한 인건비·기본경비·자산취득비만을 추계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을 1개의 시·군·자치구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할구역과 명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1개의 시·군·자치구마다 교육지원청을 둘 것을 규정하면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이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단일 관할 교육지원청인 139개 교육지원청 외에 2개 이상 복수 관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각 1개의 교육지원청이 설립될 것임
 - 교육지원청의 기구·직급기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은 ‘인구 수와 학생수’에 따라 조직구조 등을 달리 규정함¹⁾
 - 다만,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분리된 후 시·군·자치구별, 국·과별 소속 인원, 청사 건축 여부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²⁾하여, 본 추계서에서는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장인 ‘교육장’ 관련 인건비만을 추계함³⁾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

1. 기구 설치기준

구분	국	과(담당관)·센터
가. 인구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3국	
나. 인구 수가 5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2국	
다. 인구 수가 3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3만명 이상인 경우		4과(담당관), 2센터
라. 인구 수가 15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3과(담당관), 2센터
마. 인구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2과(담당관), 2센터
바. 인구 수가 10만명 미만이거나 학생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2과(담당관), 1센터

2. 기관 직급기준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가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서에서는 신설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의 인건비 관련 추가재정소요를 제시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14개, 부산 11개, 대구 4개, 인천 5개, 광주 3개, 대전 3개, 울산 3개, 경기도 6개, 강원 1개, 충북 1개, 충남 1개 등 총 52개 교육지원청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신설되는 교육지원청의 장인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장학관’으로 보해지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52명의 교육장 직위가 신설될 경우의 장학관 인건비 등4)에 대하여 추계함
 - 교육장의 1인당 인건비는 가장 많은 교육지원청이 신설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4년 장학관 봉급 등을 준용하며, 이에 신설되는 직위인 52개를 가산함
 - 추계기간 동안의 봉급 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상승률을 적용하며, 기관부담금인 공무원연금·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자산취득비에 적용될 소비자물가상승률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를 사용함

구분	직급
가. 국장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나. 과장(담당관)	장학관 또는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다. 센터장	장학사 또는 6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2) 기구 설치 기준 이외에 각 국·과·센터별, 직급별 구성인원 등은 업무 범위 및 업무량 등에 따라 변경될 것이나, 현시점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또한, 보도자료(2024.9.26.)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 이양할 예정으로, 분리 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시·군·구청 청사 공간을 활용하거나 인근에 설치되도록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므로 이 경우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이 소요되지 않아 사무실 관련 비용도 상이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임

3)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3447호)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2개의 교육지원청으로 분리·신설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로 5년간 838억 3,400만원이 추계된바 있음(오산교육지원청 공무원 증원, 청사신축 등 포함)

4) 인건비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추계하며, 인건비에는 봉급과 성과급,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되고, 기본경비는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에서의 인건비 대 물건비 비율인 6.54%를 준용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공무원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준용하였음

- 해당 가정하에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국 신설될 52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운영에 소요될 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97억 원으로 추계되었음

[표 2] 신설되는 52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관련 인건비·기본경비·자산취득비 관련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인)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인건비기본경비자산취득비(A)	0.6	1.2	1.3	1.3	1.3	—	1.3
인원수(52인) (B)	52	52	52	52	52	—	52
추가재정소요(C=A×B)	33	64	65	67	68	297	59

주: 1)2025년의 경우 6개월분만 계상됨

2)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4년도 장학관 봉급 등을 준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